

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5. .
제 안 자 : 안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, "방범원"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 등 방범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구 분	고 용 1 종	
	현 행	개 정
직 명 근무상한연령	방 범 원 53세	지 도 원 58세

□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경기도 자치 12101-1083 ('96. 4. 18) 호 공문
- 소요예산 : 해당없음.
- 조 례 안 : 별첨

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▶

제4조의 2를 삭제한다.

제5조의 [별표]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 표]

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

구 분	1 종	경 노 무
직 명	지도원	사 환
근무상한연령	58세	58세

비고 : 지도원은 조례 제 호(1996년 월 일 공포)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
<p>제4조의2(방범원의 파견)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·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[별 표]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1 종</th><th>2 종</th><th>경노무</th><th>근무상한 연 령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방범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53세</td></tr> <tr> <td></td><td></td><td>사 환</td><td>58세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방범원은 조례 제 호 (1989년 월 일 공포) 시행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</p>	1 종	2 종	경노무	근무상한 연 령	방범원			53세			사 환	58세	<p>(삭 제)</p> <p>[별 표]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·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1 종</th><th>경 노 무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직 명</td><td>지도원</td><td>사환</td></tr> <tr> <td>근무상한 연 령</td><td>58세</td><td>58세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지도원은 조례 제 호 (1996년 월 일 공포)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</p>	구 분	1 종	경 노 무	직 명	지도원	사환	근무상한 연 령	58세	58세
1 종	2 종	경노무	근무상한 연 령																			
방범원			53세																			
		사 환	58세																			
구 분	1 종	경 노 무																				
직 명	지도원	사환																				
근무상한 연 령	58세	58세																				

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

조례중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	492
--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6. 5.22
 제 안 자 : 정운섭 위원
 외 10인

1. 대안의 제안이유(원안폐기 이유)

- 등 조례의 행정여건 변화등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또는 보완하고
-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방범원 13명 뿐이며, 이들의 퇴직 시에는 정원이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
- 원안에 대하여 대폭 수정하게 되는 사항으로 원안을 폐기하고 총무위원회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대안의 주요골자

-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안산시장이 행한다(안제2조제1항)
- 제3조, 제4조의 2, 제5조 제3항 삭제함.
- 제5조 제1항 별표중 "사환" 규정을 삭제함.

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(임용권자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안산시장이 행한다.

제 3조(신규임용)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 4조의 2(방법원의 파견)을 삭제한다.

제 5조(근무상한 연령)의 [별표]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, 제3항을 삭제한다.

[별 표]

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,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

구 분	1 종
직 명	지도원
근무상한연령	58 세

비고 : 지도원은 조례 제 호 (1996년 월 일 공포)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직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법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신 . 구 . 조 . 문 . 대 . 비 . 표

현 행	원 안	대 안
제1조(생략)	제1조(현행과 같음)	제1조(현행과 같음)
제2조 ①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 의 장이 행한다. ②(생략)	제2조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	제2조 ①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안산시장이 행한 다. ②(현행과 같음)
제3조 ①~②(생략) ③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. 1. 타자원, 전화교환원인 고용직 공무원은 14세 이상 20세까지 2.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은 14세 이상 20세까지 ④(생략)	제3조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	제3조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(삭제)
제4조(생략) 제4조의2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중 방 법원을 경찰서지서 또는 과출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.	제4조(현행과 같음) 제4조의 2(삭제)	제4조(현행과 같음) 제4조의 2(삭제)

현 행	원 안	대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조 ① 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.</p> <p>(별표)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,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1 종</th><th>2 종</th><th>경 노 무</th><th>근무상한연령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방법원</td><td></td><td></td><td>53 세</td></tr> <tr> <td></td><td></td><td>사 환</td><td>58 세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방법원 중 조례 제267호(1989년 5월 20일 공포) 시행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 임용권자는 별표의 근무상한연령이 55세 이하인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당해 고용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 수급사정, 당해고용직 공무원의 담당직무의 특수성, 직무수행능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1 종	2 종	경 노 무	근무상한연령	방법원			53 세			사 환	58 세	<p>제5조 ① -----</p> <p>(별표)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,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1 종</th><th>경 노 무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직 명</td><td>지도원</td><td>사 환</td></tr> <tr> <td>근무상한연령</td><td>58세*</td><td>58세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지도원은 조례 제 호(1996년 월 일공포)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	구 분	1 종	경 노 무	직 명	지도원	사 환	근무상한연령	58세*	58세	<p>제5조 ① -----</p> <p>(별표) (원안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1 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직 명</td><td>지도원</td></tr> <tr> <td>근무상한연령</td><td>58 세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(원안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삭제)</p>	구 분	1 종	직 명	지도원	근무상한연령	58 세
1 종	2 종	경 노 무	근무상한연령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법원			53 세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사 환	58 세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1 종	경 노 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 명	지도원	사 환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무상한연령	58세*	58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1 종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 명	지도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무상한연령	58 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원 안	대 안
제6조～제10조 (생 약)	제6조～제10조 (현행과 같음)	제6조～제10조 (현행과 같음)
부 칙	부 칙	부 칙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직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</p>	<p>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직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</p>	(원안과 같음)